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법 제정〉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1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5
1.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5
2.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안 제1조)	8
3. 조문 내용별 검토	19
가. 공공조달 등의 정의(안 제2조)	19
나.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27
다. 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및 전자적 수단 등(안 제6조 및 제7조)	31

라.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안 제8조)	34
마.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41
바.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46
사.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안 제15조 및 제16조)	53
아.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59
자. 부칙	6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욱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

다. 회 부 일 : 2024. 12. 3.

II.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규모는 年 200조원을 넘어 GDP의 9.3%를 차지하고, 참가업체도 57만여 개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함. 최근 공공조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의 획득을 넘어, 산업정책, 기술혁신, 취약계층 지원, 공급망 위기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

EU, 영국, 미국 등 주요국도 공공조달을 통해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 관한 일반법에 전략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공공조달의 규모 증가와 전략적 활용의 보편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기술혁신, 기후·환경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 조달법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에 관한 것이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에 관한 법률」 등 조달청의 사업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 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일반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개별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등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적시·최적 조달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고, 경쟁·공정·투명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산업육성·기술혁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 방향,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둠(안 제8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9조).
-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을 통해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 등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으며,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아.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다자 및 양자협력,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국제 학술 회의·전시회 등의 개최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기존 공공조달의 특례와 중복성,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소관 공공조달의 특례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차.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할 수 있고,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평가 등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또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달청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IV. 검토의견

1.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제정안은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조달의 특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5개의 장과 20개의 조문 및 4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제1장 총칙	
제정 목적 (안 제1조)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공공조달의 정의 등 (안 제2조)	- (공공조달)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	- 공공조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공조달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제2장 기본원칙	
공공조달 기본원칙 (안 제5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정책의 수립 및 수행 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1. 적시에 최적의 조달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입찰·계약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 3. 건전한 산업육성·기술혁신, 공급망 안정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사회적책임에 기여하여야 함 4.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운용의 효과성이 균형을 이

구 분	내 용
	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공공조달의 계약절차 및 전자적 수단 등 (안 제6조 및 제7조)	- 공공조달의 계약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름 - 공공조달의 전자적 계약 수단, 전자입찰 절차·방법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름
제3장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등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안 제8조)	- ‘공공조달 관련 정책 방향, 법령·제도 개선, 특례 신설 타당성 검토,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둠
공공조달의 전략계획 수립 및 전략적 운용 등 (안 제9조 및 제10조)	- 기재부장관은 매년 공공조달 목표·정책방향, 추진성과·평가, 전략적 운용방안 등에 관한 공공조달전략계획을 수립함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음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안 제13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의 원활한 획득·유통·제공을 통하여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 - 기재부장관·행안부장관은 ‘전쟁·재난, 급격한 가격변동·수급불안, 국내외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 발생 시 공공조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정할 수 있음
제4장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성과관리 (안 제15조 및 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및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특례를 신설할 수 있음. 다만, 특례 신설 및 중요내용 변경시 적격성검토 실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조달 특례의 운영실적·성과를 매년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 특례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제5장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	
전문연구기관 지정 (안 제19조)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관련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위임·위탁 (안 제20조)	- 이 법에 따른 기재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 일부를 각각 조달청장 및 전문연구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정부는 2024년 4월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가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에게 적용되는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을 결정하면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¹⁾

이후, 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외사례를 통한 공공조달법의 체계적 구성방안 연구’ 용역(2024. 5. ~ 9.)을 진행²⁾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동 제정안이 발의되었음.

1) 기획재정부,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추진’ 보도자료(내용 참조), 2024. 4. 2.

2) 자세한 용역 내용은 [참고](p. 67) 내용 참조

2.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제정안 제1조(목적)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2023년 기준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는 208.6조원으로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57만개의 조달기업 및 7만개의 수요기관이 참여하는 중요한 경제부문으로 성장하였음.

[공공조달 규모 현황]

(단위: 조원, 개)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조달 규모	141.3	160.0	175.8	184.2	196.0	208.6
조달참가업체	400,915	434,062	471,100	502,710	536,305	572,118
수요기관	55,040	57,734	60,964	63,798	66,271	69,106

자료: 조달청, 공공조달 통계연보

전통적인 공공조달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 공공수요를 적기에 획득하는 절차로서의 소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산업정책, 기술혁신,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 구현을 촉진·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전략적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EU 등 주요국도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기후 대응 등 정부정

책을 위해 전략적 공공조달³⁾을 적극적으로 채택·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된 조달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조달에 관한 통합법제를 운용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주요국의 공공조달 통합법제 사례]

국가	내 용
영국	공공조달법(Procurement ACT, 2023.10.): 조달 기본원칙과 절차 규정 +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 환경정책 지원 등 정책 목표지원에 중점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on Public Procurement, 2004년): 환경·사회적가치·기술혁신을 반영한 '전략적 조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으로 공공조달 활용
미국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계약 내용·절차, 정부자산 활용·관리, 노동, 환경보전, 약자기업 지원 등을 규정
프랑스	공공발주법(2018년): 공공조달과 특허(Concession) ⁴⁾ 를 포괄적으로 규율

자료: 기획재정부

제정안은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정책을 전략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파편화된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법적 성격의 공공조달법 제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3) Strategic Public Procurement(SPP): 규모상 GDP의 10% 내외에 해당하는 공공조달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전략적으로 지원(2017년 7월, OECD)

4) 우리나라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과 유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관련 법체계는,

조달사업의 운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에서, 입찰 및 계약 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등에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 조달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등 30여 개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주요 조달 관련법 체계]

구분	조달사업		입찰·계약		조달특례
	운영	방법	일반절차	특수절차	
관련 법률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방위사업법	조달사업법, 판로지원법, 여성기업법 등 30여 개 법률

[현행 조달 관련 법의 목적 및 규정 사항과 비교]

구분	공공조달법	조달사업법	전자조달법	계약법
목적 (비전)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 정책의 원활한 이행 지원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	조달업무의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 도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규정 사항	공공조달의 기본원칙과 책무, 전략적 운용 및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에서는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 목표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혁신·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전략적 조달을 위한 조달특례 역시 일반적인 원칙 및 기준이 없이 개별 법률들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공공조달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원칙과 체계를 규정하는 제정안을 마련할 경우 공공조달법 체계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공공조달법 제정 후 관련법 체계도 ＞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모든 조달 주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조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전략적인 조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현행 공공조달 관련 법률들은 각 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 목적 및 주체를 규율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 주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조달체계를 구축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현행 「조달사업법」은 주로 중앙조달을 위한 조달청의 업무(조달 실무·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조달정책의 거버넌스를 담고 있지 않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도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달특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중복·부실 운영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조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조달사업법」은 이미 제정안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제정법을 제정할

것인지 또는 현행 「조달사업법」을 통합·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달사업법」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제5조), 사회적 책임 장려(제6조), 조달교육(제7조), 조달의 날(제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제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도 이와 유사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안 제8조), 사회·환경적 책임 고려(안 제12조),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안 제14조), 공공조달 교육훈련(안 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조달사업법」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제정안은 조달청이 수행하는 조달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조달사업까지 포함하여 규정하는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조달청은 정부가 수행하는 조달업무의 많은 부분을 소관하는 중앙조달기관이고, 조달 관련 기본사항들에 대한 유사 조항이 「조달사업법」과 제정안에 함께 규정되고 있으며, 제정안을 입법화하려는 취지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앙 집중형 공공조달 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공공조달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안을 통해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방식과 현행 「조달사업법」을

5) [참고] 해외사례를 통한 공공조달법의 체계적 구성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부개정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조달사업법」의 유사 규정 내용]

구 분	제정안	조달사업법
조달정책 심의위원회	(안 제8조) - ‘공공조달 관련 정책 방향, 법령 ·제도 개선, 특례 신설 타당성 검토,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재부장 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 위원회를 둠	(제5조) - ‘공공조달 관련 정책·제도 마련,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대상 선 정, 공공조달 관련 성과관리·평 가,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 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둠 ※제정안은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문을 조달사업법에서 삭제하도록 규정
사회적 책임 등	(안 제12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 경·탄소중립·기후위기대응, 취 약·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발 전 지원, 고용촉진 등’의 사회·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제6조) -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 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 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안 제14조) - 기재부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 외 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자 유화와 개방, 비차별, 투명성, 상 호주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협력 등 국제협력 추진	(제28조) -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 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조달교육	(안 제18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 의무화	(제7조) - 조달청장은 조달처의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업무나 납품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조달교육 실시 가 능
조달의 날	미규정	(제8조) -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하여 매년 9월 30일을 조달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 실시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적 책임 등’의 경우 「조달사업법」 규정은 기본법인 제정안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다면 조문상 충돌 여지가 없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에도 지원제도 및 예산 마련, 외국정부와의 공공조달 협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역할인 반면, 지원수단 확보, 실무적 교류·협력 등은 조달청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상호 보완적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서로 상충한다거나, 중복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조달의 날은 중앙조달기관으로서의 조달청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기본법인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그러나, 조달의 날의 경우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제정안에서 규정한 “공공조달”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공공조달”의 정의를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조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은 조달물자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규정⁶⁾하고 있어 조달청이 공공조달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전략적 공공조달 등 적극적인 조달활동은 공공조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 주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조달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의 정의에 대하여 “공공조달기관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급을 위하여 행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3. 조문 내용별 검토

가. 공공조달 등의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 “공공조달”의 정의 -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 “공공조달기관”의 정의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 ○ “공공조달의 특례”의 정의 - 법령에서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특정 물품·용역·공사를 의무적 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 법령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평가에 특정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 입찰절차에서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제도 - 그 밖에 공공조달의 절차상 의무 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안 제2조는 “공공조달”을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는 한편, 공공조달기관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조달의 특례를 법령에 따라 특정 물품 등을 의무·우선구매하거나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공공조달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 주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함.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 SOC 등 공공 영역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원의 많은 부분은 민간으

로부터 구매하는 방법으로 확보되므로, 공공조달은 ① 국가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운영·유지와 관련되었다는 의미로서 공공(公共)과 ② 공공이 필요한 물자·시설·용역 등을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취득하거나 자기 스스로 생산하여 보유한다는 의미로서의 조달(調達)을 결합한 용어로 이해됨⁷⁾.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는 계약·입찰 등 조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조달사업법」에서는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등,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제정안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적 주체를 공공조달기관으로 나열하여 정의하는 한편,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조달로 정의함으로써 제정안이 전체 공공조달을 아우르는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조달 및 공공조달기관과의 관련 사항을 정의하고 있는 법령]

구 분	법률명	규정 내용
공공조달 관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달업무”란 수요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7)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정무경·이용주·김태완·손금주·강경훈, 박영사, 2024, p. 3.

구 분	법률명	규정 내용
공공조달 기관 관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또한,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제품(중소기업·장애인·여성기업 생산제품 등)의 우선구매 등 공공조달의 특례가 여러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공공조달 특례의 신설·변경 등을 검토하고 특례성과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산재된 제도들을 공공조달의 특례로 묶어서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법령상 공공조달 특례 중 우선·의무구매 및 구매실적 평가 대상]

구 분		주요 내용	도입연도	근거법률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2006년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2009년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제품	▶ 물품 5%, 용역 5%, 공사 3%	2014년	여성기업법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2021년	창업지원법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2016년	장애인기업법
보건 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물	▶ 물품·용역 구매액의 1%	2008년	중증장애인 생산물법
	자활기업제품	▶ 자활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고	2021년	국민기초생활법
산업통상 자원부	신제품(NEP)	▶ 해당되는 품목 구매액의 20%	2007년	산업기술혁신법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제품	▶ 우선구매 후 구매실적 제출	2013년	사회적기업법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물	▶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2013년	장애인고용법
환경부	녹색제품	▶ 물품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의 무	2005년	녹색제품구매법
기획 재정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 우선구매 후 구매실적 제출	2014년	협동조합기본법
조달청, 각 부처	혁신제품	▶ 목표금액 달성 경영평가 반영	2020년	조달사업법
문화체육 관광부	장애예술인창작품	▶ 구매하는 창작품의 3%	2023년	장애예술인지원법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안에 따른 “공공조달”의 정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은 “공공조달”을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전통적인 조달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은 조달물자를 공급하는 기관으로 규정⁸⁾하고 있어 조달청이 공공조달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전략적 공공조달 등 적극적인 조달활동은 공공조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및 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모든 조달 주체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조달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의 정의를 “공공조달기관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여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급을 위하여

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물류관리, 공급 및 그에 따른 사업
2. 수요기관의 공사 계약 및 그에 따른 사업
3. 수요기관의 시설물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사업
4.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5.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하도록 규정한 사업

행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활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둘째,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안 제1조(목적)에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등”을 제목으로 하는 제3장에서는 안 제9조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면서, 안 제10조의 조 제목을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으로 명시하여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하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이라 함)의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혁신조달, 사회적 가치 실현, 환경친화적 조달 등 공공조달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조항 또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정의 조항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여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 외에도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공공조달 활용 방안 등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알 수 있도록 정의 조항에서 이를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략적 공공조달”의 정의를 “공공조달기관이 기술혁신, 사회·환경적 책임 등의 국가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달”이란 공공조달기관이 필요한 물품·용역·공사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조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3. “공공조달의 특례”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법령에서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특정 물품·용역·공사를 의무적 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제 정 안

나. 법령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평가에 특정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다. 입찰절차에서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제도

라. 그 밖에 공공조달의 절차상 의무 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나. 국가·지자체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등(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 정 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조)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노력 - 기재부장관은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조달을 총괄·조정하며 그 운용의 성과를 관리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 수립·운영 및 정책기반 조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조달 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공공조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름 -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 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 공공조달 기본원칙(제5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정책의 수립 및 수행 시 다음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1. 적시에 최적의 조달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며, 입찰·계약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함 3. 건전한 산업육성·기술혁신, 공급망 안정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및 사회적책임에 기여하여야 함 4.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운용의 효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 전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공조달에 관하여는 제정안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공공조달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5조(공공조달 기본원칙)는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수행 시에 지켜야 될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제정 취지 중 하나가 공공조달의 개념을 공적 주체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공급하는 소극적 계약자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공공조달로 하여금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 조달자로서의 기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따라서, 안 제5조에서 ‘자원의 적시 조달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 산업육성·기술혁신 및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 등의 원칙을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적극적 공공조달의 역할 수행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조는 이러한 기본원칙 준수와 함께 공공조달의 체계적·전략적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는 공공조달 관련 법 적용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제정안이 공공조달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제1항), 다른 법률의 모범이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사항을 규정(제2항)한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조달사업법」 모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⁹⁾을 두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안을 통해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방식과 현행 「조달사업법」을 전부개정하는 방식의 선택여부에 따라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사회적 책임, 교육훈련, 국제협력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을 통한 기본법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법률 간에 중복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조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조달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달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과 정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략과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조달을 총괄·조정하며 그 운용의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에 관한 정책 수립, 운영 및 정책기반 조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조달 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공조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공조달에 관한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조달 기본원칙)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하 “기본원칙”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적시에 최적의 조달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경쟁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계약에 참가하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3. 건전한 산업육성 및 기술혁신,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국가정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하여야 한다. 4.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전략적 운용의 효과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및 전자적 수단 등(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 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등(제6조) - 공공조달의 계약절차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름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다르게 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기재부장관 또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특례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공조달의 전자적 수단 등(제7조) - 공공조달의 전자적 계약 수단, 전자입찰 절차·방법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에 따름

안 제6조(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등)는 공공조달의 계약절차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의 절차와 다른 특례 신설 시 그 주무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특례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안 제8조에 따른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통제장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공공조달의 전자적 수단 등)도 공공조달의 전자적 계약 및 전자입찰 절차 등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이 「전자조달법」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가·지자체 등의 공적 계약 또는 전자조달 절차에 대한 적용범위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또는 「전자조달법」 자체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이 공공조달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적 지위에 있으므로 공공조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계약 법률과 전자조달 법률에 대한 적용 근거를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 법률 간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및 「전자조달법」의 적용범위]

법률	법률의 적용범위
「국가계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u> 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계약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u> 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조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 으로써 조달업무를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를 원활한 수행과 추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절차와 다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주무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다른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6조제2항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만으로 특례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

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유사입법 제10)를 참고하여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와 다르게 특례를 신설하려면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6조(공공조달의 계약 절차 등)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공공조달의 계약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 정 안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계약 절차와 다르게 특례를 신설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특례 신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공공조달의 전자적 수단 등) 공공조달의 전자적 계약 수단, 전자입찰 절차 및 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안 제8조)

제 정 안
○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둔 * 심의사항: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방향, 공공조달 관련 법령·제도 개선 중요 사항, 공공조달 기본원칙의 신설·변경,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중요 변경,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및 실적·평가,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 및 중요 변경,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 관련 중요 사항,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장(기재부장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조달·경제과학·기술혁신·사회환경 등의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재부장관이 임명·위촉 -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둔 ※ 안 부칙(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조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삭제

안 제8조는 공공조달 관련 정책·법령·제도 등을 심의·조정하고 정책 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조문은 안 부칙(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제정안에 옮겨 규정하려는 것으로, 소속 및 구성인원 등은 기존 조달정책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공공조달 관련 주요 내용 전반을 심의하도록 심의 내용을 확대하여 규정함.

[제정안과 「조달사업법」 간 공공정책심의위원회 간 비교]

구 분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기재부장관 소속 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장(기재부장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조달·경제과학·기술혁신 등의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재부장관이 임명·위촉	
심의 내용	-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방향 - 공공조달 관련 법령·제도 개선 중요 사항 - 공공조달 기본원칙의 신설·변경 -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중요 변경 -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및 실적·평가 - 공공조달 특례 신설·중요 변경 -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 관련 중요 사항 -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공조달 관련 중장기적인 정책·제도 마련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 - 공공조달 관련 성과관리·평가 -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 -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만,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공공조달 관련 주요 내용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면서 기존 「조달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거나 추가·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의 사항은 심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조달사업법」의 해당 조문¹¹⁾(제5조제1항제4호)은 2023년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¹²⁾에 따라 신설된 내용으로,

공공혁신조달사업 업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혁신조달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취지였음.

따라서 제정안 부칙으로 「조달사업법」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제외하는 것은 「조달사업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므로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조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제도의 마련
2.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수요 발굴 및 구매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조달과 관련된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달정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12) 법률 제19869호(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

이를 제정안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조달사업법」 제5조를 삭제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우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시 이를 심의하는 기관¹³⁾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개정해야 하므로, 타법개정 또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운영 등 사항”은 안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¹⁴⁾에 해당하므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된다는 입장임.

둘째,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8조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외에 공공조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

1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구매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제11조(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특례 신설 등 공무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 등의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 「조달사업법」 제34조¹⁵⁾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8조(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① 공공조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중요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제 정 안

3. 제5조에 따른 공공조달 기본원칙의 신설·변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특례 신설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결과
 5. 제9조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8.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9.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공조달, 경제·과학, 기술혁신,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안 제9조) - 기재부장관은 매년 “공공조달 목표·정책방향, 추진성과·평가, 전략적 운용방안, 사업추진 방향,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방향 등”에 관한 공공조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기재부장관은 전략계획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전략계획 이행사항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정책·제도 개선에 반영 ○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안 제10조)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 또는 중요내용 변경 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공공조달의 목표·정책방향 등을 포함하는 공공조달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계획(공공조달 전략계획)과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이는 제정안의 제정 취지인 공공조달 구매력을 예산·세제·금융과 같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조달에 대한 전략계획 및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함으로써 전략적 공공조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조달 전략계획은 공공조달의 목표·정책방향 등을 담은 공공조달에 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달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조달 전략계획 또는 추진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정안과 성격이 비슷한 국가정책 관련 기본법 등에서 기본계획 또는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보고·제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본계획 등에 대한 국회 보고·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

법률	내 용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 확정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관광기본법 (제4조)	-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
국토기본법 (제2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문화기본법 (제12조의2)	- 문화진흥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법률	내 용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의2)	-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내용, 해당연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둘째, 안 제10조는 조 제목을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으로 하고 있는데, 조문의 내용상으로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은 별도의 정의를 통해 그 뜻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11조(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안 제12조(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안 제13조(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등이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안 제10조의 조 제목을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추진”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작성 및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국가정보원은 「조달사업법」 제11조¹⁶⁾에 따라 공공조달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 또는 국가기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은 제정안에 따른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공공조달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수행하는 구체적인 공공조달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9조(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인 전략계획(이하 “공공조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공공조달의 목표 및 정책 방향 2. 공공조달의 추진 성과 및 평가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방안 4. 공공조달의 사업 추진 방향 5. 우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추진 방향 6.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없거나 국방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재해 또는 긴급 복구 및 기술의 특수성 등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정 안

그 결과를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하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료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바.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 정 안
○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안 제11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음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조달할 수 있음 ○ 사회·환경적 책임 고려(안 제12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취약·소외계층 지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 고용 촉진,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공중보건·공공안전, 인구정책 등’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사회·환경적 가치를 공공조달 정책에 반영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재정운용의 효율성, 사회·환경 및 연관 산업의 조성·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안 제13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가·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의 원활한 획득·유통·제공을 통하여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 - 기재부장관·행안부장관은 ‘전쟁·재난, 급격한 가격변동·수급불안, 국내외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 등’ 발생 시 공공조달 계약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정할 수 있음 ○ 해외조달시장(안 제14조) - 기재부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시장의 자유화와 개방, 비차별, 투명성, 상호주의 달성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협력, 공공조달 혁신사례 공유를 위한 교류,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전시회 개최,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조달이 산업정책·기술혁신·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국가정책을 지원하는 전략적 공공조달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지향, 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방안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안 제11조(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는 공공조달기관이 기술혁신,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혁신기술적 제품의 발굴 및 공공구매를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로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17)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구매제도, 혁신제품 지원센터 운영, 혁신제품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공공분야에 혁신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안 제12조(사회·환경적 책임 고려)는 공공조달기관이 공공조달에 중소기업 보호·육성, 환경·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 발전 등 사회·환경적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7조의2(혁신제품 지원센터) ① 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2.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3.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4.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 사례 조사

가치를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달시장은 GDP의 9.3%(208.6조원, 2023년 기준)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조달절차에서 기업의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ment) 이른바 ESG라는 비재무적 요소를 강화시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기업은 기업경영에 ESG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등 정부의 사회적 정책목표를 더 수월하게 달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현행 「조달사업법」 제6조¹⁸⁾는 조달청장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녹색제품, 중소기업·장애인·사회적기업 생산 제품 등에 대해 계약상 우대 및 의무구매제도 등을 운영 중이며,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 시에도 이행능력, 가격 외에도 환경·사회적 책임 등 신인도를 평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2014년에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 제18조에서 조달의 원리로 평등원칙, 투명원칙, 비례원칙, 경쟁원칙 등 외에 사회적 책임을 들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공공시설공사 계약 건에 대해 입찰평가 시 사회적 가치평가의 배점요소 반영을 의무화¹⁹⁾하고 있음.

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19) 영국 정부는 사회적 가치평가 요소로서 친환경, 노동조건(생활임금 적용 등), 인권 등 다양한

안 제13조(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는 공공조달기관이 국가·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등의 제공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자원 분포의 지역적 편중과 코로나19 대유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²⁰⁾ 등을 통해서도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청·한국광해광업공단 등도 비철금속·주요광물에 대한 비축사업 등의 조달사업을 통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전체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정적 유지를 지원토록 하는 기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시책 마련 및 국제

배점 요소를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2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현행 「조달사업법」에 규정된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달사업법」 제28조²¹⁾에서는 조달청장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과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일한 역할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다수의 주체에게 유사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 또는 행정적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수립·추진이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주요 전략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제정안을 통해 별도의 기본법을 마련하는 방식과 현행 「조달사업법」을 전부개정하여 그 기능을 확대

21) 「조달사업법」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방식의 결정여부에 따라 「조달사업법」 제28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1조(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기술혁신과 국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혁신적 제품을 발굴하여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환경적 책임 고려)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보호·육성 2. 환경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3. 취약·소외계층 지원 4. 지역 균형발전 지원 5. 고용 촉진 6.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7. 공중보건·공공안전 8. 인구정책 9. 그 밖에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적 가치를 공공조달 정책에 반영할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사회·환경적 가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서비스의 질 2. 재정 운용의 효율성 3. 사회·환경 및 연관 산업의 조성·발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등)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제 정 안

획득·유통(비축을 포함한다)·제공을 통하여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 및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의 긴급하고 신속한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공공조달 계약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소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상황
2.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수급 불안
3. 국내외 공급망의 심각한 교란
4. 그 밖에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제14조(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개방, 비차별, 투명성, 상호주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정부와 조달 분야 다자 및 양자협력
2. 공공조달 혁신 사례 공유를 위한 인력·정보의 교류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전시회 등의 개최
4.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안 제15조 및 제16조)

제 정 안
○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안 제1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 및 사회·환경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특례를 신설할 수 있음. 다만, 특례 신설 및 중요내용 변경 시 ‘타다성 및 수단의 적절성, 기존 특례또는 정부지원제도와 중복성, 경제적·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적격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격성 검토결과를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재부장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적격성 검토(특정물품 등 우선·의무구매, 특정 구매 실적이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제도에 한정)는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관리(안 제1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조달의 특례의 운영실적·성과를 매년 점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 성과보고서에는 ‘특례에 따른 정책목표, 정책목표 대비 실적, 제도개선 내용 및 실적, 우선구매비율의 적정성, 관리체계 개선내용 및 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 특례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기재부장관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현재 여러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조달 특례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중복·부실 운영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정의(안 제2조제3호)하고, 이와 함께 ① 기술혁신지향 공공조달(안 제11조) 및 사회·환경적 가치(안 제12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 신설 목적을 명확히 하고, ② 특례

신설 또는 중요내용 변경 시 타당성·적절성 등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기적으로 특례 성과를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조달 특례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적격성 검토를 통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조달 특례의 효율적 총괄·총량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주기적 자체점검 및 종합평가의 실시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조달 특례 성과관리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현행 법령에 따른 공공조달 특례 중 공공조달 정책별 구분]

구 분		주요 내용	근거법률
사회적 약자 지원	중소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판로지원법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5%	판로지원법
	여성기업제품	▶ 물품 5%, 용역 5%, 공사 3%	여성기업법
	창업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8%	창업지원법
	자활기업제품	▶ 자활기업 제품 우선구매 권고	국민기초생활법
	장애인기업제품	▶ 총 구매액의 1%	장애인기업법
	중증장애인생산물품	▶ 물품·용역 구매액의 1%	중증장애인생산물품법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물품	▶ 물품·용역 구매액의 0.8%	장애인고용법
	장애예술인창작품	▶ 구매하는 창작품의 3%	장애예술인지원법
사회·환경적 가치	사회적기업제품	▶ 우선구매 후 구매실적 제출	사회적기업법
	사회적협동조합제품	▶ 우선구매 후 구매실적 제출	협동조합기본법
	녹색제품	▶ 물품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의무	녹색제품구매법
기술개발	신제품(NEP)	▶ 해당되는 품목 구매액의 20%	산업기술혁신법
	혁신제품	▶ 목표금액 달성 경영평가 반영	조달사업법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만, 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하는 특례는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안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중요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는 일반적인 조달절차의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특례는 법령으로 신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2조제3호²²⁾에 따르면 공공조달의 특례를 법령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입법례를 참고²³⁾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하는 특례는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적격성 검토에 대한 위원회 심의 시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 신설 및 중요한 사항 변경 시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기

22)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조달의 특례”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가. 법령에서 공공조달기관의 장이 특정 물품·용역·공사를 의무적 또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

나. 법령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평가에 특정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

다. 입찰절차에서 신인도 평가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 제도

라. 그 밖에 공공조달의 절차상 의무 또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

2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적격성 검토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만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격성 검토 후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격성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절차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검토사항 및 유사입법례²⁴⁾를 참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하는 특례를 법령으로

2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조달의 특례는 구매의무를 국가기관 등에 지우거나, 절차상 「국가계약법」의 예외(수의계약 가능)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그 형식을 법령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5조(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2조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할 수 있다. 다만,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이하 “적격성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변경의 타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2. 기존 공공조달의 특례 또는 정부 지원제도와와의 중복성 3. 정책대상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적격성 검토 결과(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격성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적격성 검토(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기준,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공조달의 특례 성과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조달의 특례(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결과(이하 “성

제 정 안

과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정책목표
2.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정책목표 대비 실적
3.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 및 실적
4. 공공조달의 특례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의 적정성
5. 공공조달의 특례 시스템·통계·연구·교육 등 관리체계 개선내용 및 실적
6.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 관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효율적인 운용과 성과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과평가에 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공공조달의 정책기반 조성(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 정 안
○ 공공조달의 통계(안 제17조) - 기재부장관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통계결과를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 ○ 공공조달 교육훈련(안 제18조)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 실시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안 제19조) - 기재부장관은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정책수립·제도개선 조사·연구, 공공조달 특례 성과평가·적격성에 대한 조사·연구,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기재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 출연 및 예산범위 내 지원 ○ 위임·위탁(안 제20조) - 이 법에 따른 기재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음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공조달통계의 활용, 교육훈련, 공공조달 관련 조사·연구를 담당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공기관의 조달 정책역량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임.

공공조달통계의 활용(안 제17조)은 현재 「조달사업법」 제9조25)에

2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조달통계) 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조달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등(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조달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 조달청장이 작성하는 국가기관 등의 입찰·계약·대금지급 등에 관한 조달통계를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고,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토록 하려는 것이며, 교육훈련(안 제18조)은 공공조달기관이 소속 공무원·직원의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안 제19조)은 공공조달 관련 조사·연구·심사 및 성과평가 등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위임·위탁(안 제20조)은 이 법에 따른 기재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 일부를 조달청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은 안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문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공조달 관련 조사·연구·심사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특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경쟁입찰 절차없이 특정 기관에 직접적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일정기간 조사·연구용역 등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관

런 기관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거나, 검증된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동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7조(공공조달 통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조달통계 결과를 제9조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과 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조달 통계를 공공조달기관과 공유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조달 통계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공조달 교육훈련) ①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평가, 신설 및 변경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연구 3.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의뢰한 조사·연구·심사·평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제 정 안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자. 부칙

제 정 안
○ 안 부칙 - 시행일(제1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제2조):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조달 전략계획부터 적용 -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 조달사업법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삭제 ※제정안(제8조)에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 경과조치(제4조):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정안(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봄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행 후 수립하는 전략계획부터 적용하고,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안 부칙 제3조)한 후 제정안에서 규정(안 제8조)하며, 이에 따라 「조달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어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조달사업법」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시 이를 심의하는 기관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변

경하여야 하므로, 타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부칙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부칙 안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달사업법」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안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8조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에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사업법」 제5조 또한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와 함께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달사업법에 따른 실무위원회를 제정안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도 부칙에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부칙에서 타법 개정으로 「조달사업법」 제5조를 삭제할 경우 (부칙 안 제3조)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제1호에 대해서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조달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조달 전략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160

1. 공공조달법제 개편의 입법론적 검토

□ 법제 개편의 방향성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개편 방안

- 공공조달 분야 법제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방안은 해외법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① 통합법전화 방안, ② 「조달사업법」 전면개편 방안, ③ 「공공조달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통합 법전화 방안
 - 통합 법전화 방안은 조달-계약-개별 법령 조달-특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인 공공조달법을 통합하는 방안(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통합법전화 방향, EU의 공공조달지침)
 - 이 방안은 공공조달의 입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일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포괄입법체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특히, 개별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합 입법체계에 고정화하는 단점으로 변화에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입법체계에 있어서 통합 법전화에 관한 논의는 환경법전 제정 등의 일부 논의가 있지만 입법적으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입법이라는 점에서 제정에 어려움이 있음
- 「조달사업법」 전면 개편 방안
 - 「조달사업법」 규율사항을 조달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조달 전반에 관

한 규율입법으로 전면적 개정하는 방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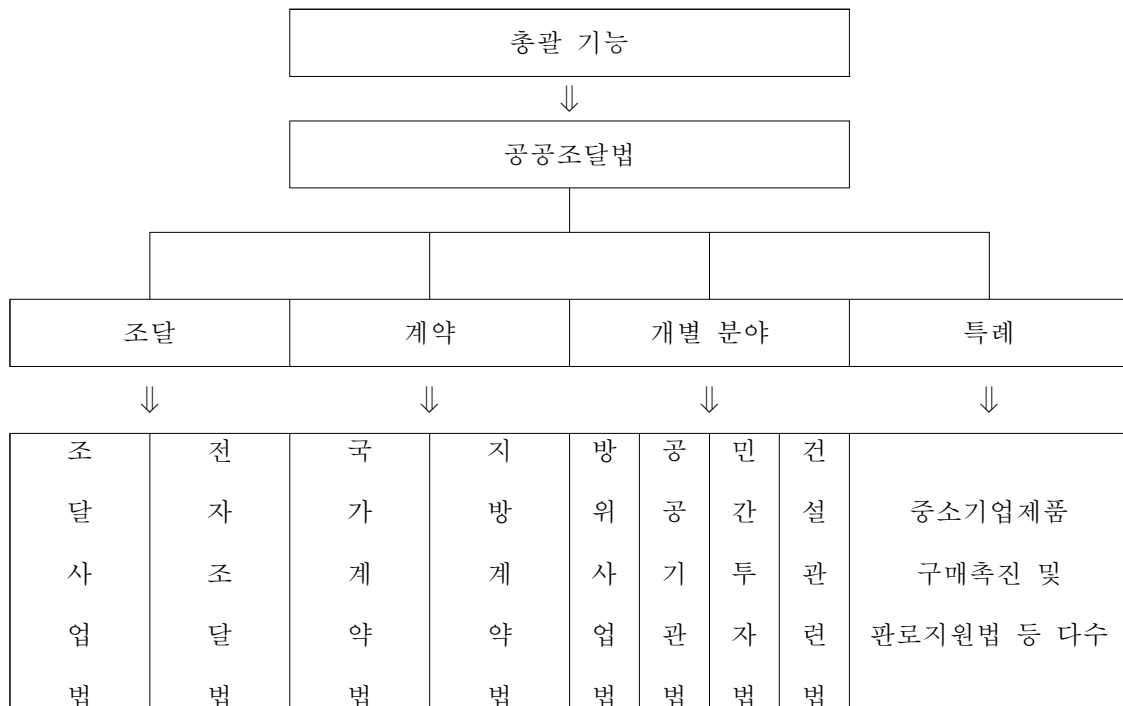
- 이 방안은 현행 조달사업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공공조달에 관한 논의를 담고, 거버넌스를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장관)이 규율하는 방식으로 개정
- 본질적으로 공공조달의 정책적 논의와 조달사업의 실무적·절차적 내용은 같은 법에 규율하는 거버넌스의 체계에 적절하지 않음
- 전문분야 행정기관을 활용하는 것은 그 전문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전문기관이 가지는 한계 등을 보완하는 방식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성과 적절성 및 절차적 타당성을 확립하는 방안이 될 것임
- 이 방안은 근본적으로 현행 입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움이 있음. 거버넌스적 관점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공공조달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전략적 공공조달 영역에 관한 기관 간 협력 및 협조 등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나아가 미래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정적·조직적 한계도 있다고 할 것임

- 「공공조달법」 제정 방안

- 이 방안은 현행의 입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총괄적인 규율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방안임
- 조달-계약-개별 법령-특례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법령의 규율체계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임
- 새로운 입법의 제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규율체계와의 관계정립의 어려움과 입법과정에 있어서 논의의 장기화 등의 어려움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글로벌 공공조달 환경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입법체계는 유지하면서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보완적·협력적 입법방안으로 제정방안을 제시함

○ 소결

- 공공조달법제의 개편방안은 통합 법전화 방안은 우리의 입법체계에 적절한 입법방안이 아니며, 「조달사업법」의 전면적 개편방안도 실질적인 공공조달 정책의 대응력과 효율성을 확립하는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조달법」 제정 방안을 적절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공공조달법」 제정 방안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며, 제정 입법을 통하여 기존의 입법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입법을 보다 원활하게 체계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방안이라고 할 것임
- 특히,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법령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체계화 방안을 새로운 입법체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정책과 제도의 안정화와 효율적 운영에 적절한 입법적 대안이 될 것임
- 「공공조달법」 제정에 따른 입법체계 개편 방향



2. 제정 입법의 필요성

□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조달 법제 정립

○ 중앙집중형 공공조달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 필요

- 기존의 분산형 공공조달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EU 등 유럽국가에서 중앙집중적 공공조달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운영 입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유럽의 중앙집중형 조달체계는 기관통합의 방식이 아닌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 등 공공조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집중을 의미하는 것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을 다른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아니라 조달청 운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앙집중형 공공조달 정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조달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적 방안 제시

- 글로벌 공공조달 정책은 수요 중심의 획득정책에서 혁신적 기술기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혁신공공조달 정책은 기술적 기반을 갖춘 물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신기술을 창출하고 신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음
- 혁신기술 공공조달 정책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임
- 중앙조달기관의 중심적 역할과 기능을 혁신공공조달의 실효성 확보에 두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 관련 사항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이 입법정책적 반영

- OECD 보고서 등에서 공공조달 분야의 정책적 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음
- OECD 및 EU 등의 선진 각국은 효율적 재정집행 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에서 2010년대 전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혁신 촉진, 녹색/친환경성 강화, 사회적가치 추구 등 수평적 정부정책(Horizontal Policy)의 구현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음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개별 법령상의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와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제정법에서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함

□ 현행 공공조달제도의 운영적 한계 극복을 위한 법제 정립

○ 입법을 통한 공공조달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공공조달 통합원칙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령에 반영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조달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방향 및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총괄 법률로서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공공조달 영역의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조달을 통한 국가적·사회적·경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입법적 대응

- 팬데믹 위기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는 물론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적 위

기,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조달 정책의 입법적 대응이 필요

- 현행 공공조달법제는 조달관리와 운영을 위한 계약절차 관리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방위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전국가적 위기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법제 정립이 필요
- 각 국의 입법례와 정책적 내용을 볼 때, 공공조달의 역할과 기능의 근본적 변화를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입법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립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보편화 경향에 따른 입법적 대응

○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 보편화

- OECD 및 EU 등의 선진 각국은 효율적 재정집행수단으로서의 공공조달에서 2010년대 전후 글로벌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중소기업 지원, 혁신 촉진, 녹색/친환경성 강화, 사회적 가치 추구 등 수평적 정부정책(Horizontal Policy)의 구현을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Strategic Public Procurement)’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국내의 공공조달은 법적·정책적·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 변화하는 공공조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공공조달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

○ 전략적 공공조달에 대한 입법정책적 고려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전략적 공공조달을 하나의 정책적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조달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술혁신,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공공조달, 사회적 가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공공조달의 보편적 정책으로 제시하고, 관련 입법정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3. 제정 입법의 주요 내용

□ 공공조달 분야의 총괄 입법 제정 필요

○ 공공조달 시장에 적합한 법체계 재정립 필요

-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조달사업’에 한정된 정책기반과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는 한계를 지님
- 공공조달에 관한 국가적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정책 마련을 통한 안정적 공공조달 기반구축이 필요

○ 효과적인 공공조달 정책기반 마련 필요

-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추진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공공조달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적 지원정책 마련 필요
- 공공조달의 개념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책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공공조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 방안에 따른 관련 사항의 효과적인 활용과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제시

○ 공공조달에 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일상적인 조달사업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감염병·자연

재해·사회적 재난 등의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공공조달 정책의 기반 구축이 필요

- 입법을 통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적절한 위기대응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조달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공공조달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제시

□ 공공조달의 기본원칙 제시

○ 공공조달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원칙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함

- 선언적 사항의 나열이 아닌 공공조달에 있어서 필요한 실질적이고 적용가능한 원칙을 제시
- 기본원칙에 따른 공공조달 전반의 체계구축과 정책적 기반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

○ 효율성·투명성·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제시

- 효율성은 공공조달의 본질이 국가재정에 있음을 확인하고, 공공조달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
- 투명성은 공공조달에 있어서 계약의 투명성은 물론 참가자의 권리보호,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준수 등의 원칙을 제시
- 사회적 책임은 공공조달의 지속가능성과 건전한 산업육성, 기술혁신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의 원칙을 제시

○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 원칙 제시

-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 제정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로써 기본원칙으로 제시

- 공공조달을 통한 다양한 국가정책 지원 및 구매력의 체계적이고 전략적 활용을 위한 정책으로서 정부의 공공조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제시
- 공공조달을 통하여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획득·유통과 비축·제공을 통한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공공조달에 있어서 사회·환경정책적 고려를 반영

- 공공조달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등에 기반한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인구정책 고려,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반영, 공공안전과 공정거래 정책의 고려 등 사회·환경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입법정책 마련
- 공공조달 정책에 있어서 고용촉진과 취약·소외계층 지원 등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제공

□ 새로운 공공조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 제시

○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대응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적 대책 마련 방안 제시
- 외국 기업의 국내 공공조달 시장 참여 및 공공조달시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및 입법정책적 방향성 제시

○ AI 등 공공조달 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 AI, 로봇, 우주항공 등 신기술·신산업에 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한 공공조달 정책 대응방안 마련
- 공공조달을 통한 지원정책과 활용정책 전반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
-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법 등 공공조달 관련 입법적 체계 검토 및 방향성 제시

4. 제명

○ 법령 제명의 결정

- 법령의 제명은 규율을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하여야 함
 - 다른 법령의 제명과 달리 정하여야 하며, 혼동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 법령의 내용에 맞는 제명으로 간결하게 결정
- 법률의 제명은 일반적으로 「○○법」 또는 「○○에 관한 법률」로 정함
 - 결정에 일반적 기준은 없지만 법령의 내용이 복잡하여 제명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표현하는 경우에 「○○에 관한 법률」로 씀
- 제명에 필요한 경우, 법률의 성격이나 특징을 반영하여 제명을 정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기본법, 특별법, 특례법 등과 같이 그 법률의 내용이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씀
 -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일반법이 없는 경우에는 쓰지 않으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을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일반법의 경우에는 일반법으로 쓰지 않으며,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본법 등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조달의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반영

- 공공조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다양한 제명을 구상할 수 있으나, 간결하면서 입법목적과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명으로 쓰도록 함
-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은 공공조달의 성격과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입법목적과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명이라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제명으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기본법 등의 제명 활용은 정책과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다양한 지원정책과 감독사항 등을 반영하는 정책입법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부적합하며, 구체적인 입법내용을 나열하는 방식은 구체성의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모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은 간결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법의 성격과 내용의 포괄성을 반영한 제명으로서 적절한 방안으로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명으로 제시하고자 함